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 2.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용 안내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본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내용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장 개요

1.1. 목 적 2

1.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2

1.3. 구 성 3

1.4. 용어의 정의 3

제2장 마이데이터 산업

2.1. 마이데이터산업 8

2.2.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12

가. 원 칙 12

나.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시 유의 사항 12

다. 알고하는 동의 원칙 13

2.3.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14

가. 이해상충 방지 내부관리규정 마련(법 제22조의9②) 14

나. 스크린 스크레이핑 금지(법 제22조의9③) 15

다. 정기전송 비용 부담(법 제22조의9⑥) 16

라.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⑩) 16

마. 전송 기록 정보주체 통지(영 제18조의6⑩) 16

바. 손해배상책임 이행 책임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법 제43조의3) 16

사. 금지행위 17

CONTENTS

2.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19

가. 정보제공자의 API 정보전송 의무(법 제22조의9④) 19

나.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 ⑩) 20

제3장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3.1.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22

가.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22

나. 전송요구와 제공동의의 차이 22

3.2. 주요 당사자 23

가. 정보제공자 23

나. 정보수신자 25

다. 중계기관 26

라. 거점중계기관 27

3.3. 대상 정보 28

가. 여수신정보 29

나. 보험정보 35

다. 카드정보 40

라. 금융투자정보 45

마. 전자금융업 정보 47

바. 개인형IRP 정보 51

사. 통신업 정보 52

아. 보증보험 정보 53

자. 공공정보 55

3.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56

3.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59

가. 마이데이터전송절차 59

나. 일반전송절차 59

제4장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4.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64

4.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65

가. 참여기관 관리 65

나. 정보항목 선정 및 표준화 66

다. 과금체계 운영방안 관리 66

라. 민원·분쟁사항 관리 67

마. 정기협의체 운영 67

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68

제5장

Q&A

5.1. 마이데이터산업 Q&A 72

가. 정보수집 72

나. 정보 제공 및 활용 74

다. 업무범위 등 77

라. 마이데이터서비스 80

마. 기타 81

5.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Q&A 83
가. 전송정보 83
나. 정보수집·활용·보관 84
다. 정보 항목 85
라. 기타 89

5.3. 기타 90

제6장

부록

부록 1. 코드표 92
가. 계좌번호별 유형 및 상태 구분 코드 92
나. 상환방식 코드 93
다. 보험관련 코드 94
라. 금융투자업 정보 관련 코드 96
마. 전자금융업권 거래유형 코드 98
바. 카드정보 코드 100

부록 2.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서비스 상세 102
가. 종합포털 서비스 목록 및 참여자 역할 102
나. 서비스 상세 102

개정 이력

버전	개정일자	내 용	작성자
1.0	2021.2.23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한국신용정보원

PART.

01

개요

1.1. 목 적 2

1.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2

1.3. 구 성 3

1.4. 용어의 정의 3

1 개요

1.1. 목 적

-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산업'이라 한다)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대략을 안내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실행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마이데이터산업의 안정적인 출범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1.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산업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하여 적용함

- 본 가이드라인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및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우선할 수 없음을 유의

- 개인신용정보 전송의 기술적·구체적 절차는 금융보안원 발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을 따름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및 제22조의9에 따라 전송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은 본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하여 적용

1.3. 구 성

- 본 가이드라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개요)**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적용 방법 및 용어의 정의를 설명

  - **(제2장 마이데이터산업)** 마이데이터산업의 개요, 운영방안 및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등을 설명

  - **(제3장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전송의 의의, 주요 당사자, 전송 대상 정보, 전송 요구 방법 및 절차, 정보 전송의 방법 및 절차 및 기타 의무 등을 설명

  - **(제4장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및 역할을 설명

  - **(제5장 Q&A)** 주요 질문사항을 설명

1.4. 용어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음. 그 외 용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감독규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가급적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규의 용어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일부 용어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별도로 정의하였음(고객,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마이데이터사업자 등)

-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거래내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고객)**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 신용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주체

- **(정보제공자)**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 **(정보수신자)** 정보제공자가 전송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신하는 자

- **(마이데이터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마이데이터서비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및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 **(본인인증)** 고객이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제공자가 고객이 해당 정보의 정보주체이며 전송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

- **(개별인증)** 각각의 정보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고객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의 본인인증(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정보를 전송 요구할 때 마다 정보제공자의 수만큼 인증이 이루어짐)

- **(통합인증)** 다수의 정보제공자가 공통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을 동시에 인증하는 방식의 본인인증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송규격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마이데이터산업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전송규격·표준화, 중계기관 운영, 수수료 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마이데이터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로써 정보제공자 및 마이데이터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고객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내역 일괄조회 서비스 등(이하 '종합포털'이라 한다)

- **(중계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API 요청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계하는 신용정보법 상 기관

- **(거점중계기관)**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전송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를 제외한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기관

- **(자격증명)** API 요청시 상호간 자격을 인증하고 식별하기 위해 종합포털로부터 발급받는 값

- **(접근토큰)** API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받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정보

- **(TLS인증서)**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상호인증 및 암호화 채널 형성을 위한 인증서

www.kcredit.or.kr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PART.

02

마이데이터산업

2.1. 마이데이터산업 8

2.2.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12

2.3.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14

2.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19

2 마이데이터산업

2.1. 마이데이터산업

- **(의의)**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허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산업으로 운영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되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인력 요건을 두지 않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

  - 다만,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 구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는 부여**

  - ①핀테크 생태계 조성, ②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③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④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허가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발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허가 매뉴얼」 참고)

- **(허가 예외)**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는 마이데이터산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예시 **마이데이터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의 예시(허가 불필요)**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⑤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 **(겸영·부수 업무)** 통합조회 서비스와 더불어 겸영·부수 업무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종합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겸영업무는 다음과 같음

	겸영업무	비 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1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방식(로보어드바이저 방식)으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음	필요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필요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필요
4	신용정보업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 신용정보업을 영위 할 수 있음	필요
5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법령에서 허용된 고유·겸영·부대업무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은행업, 신용카드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필요
6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관계법률을 제외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무(〈예시〉불법사채업등)를 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와 겸영 가능	필요
7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한도를 비교·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함	필요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필요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필요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음

	부수업무	비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통합조회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전기·가스·수도료 납부 정보, 세금·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외에도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필요
4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6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7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8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9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10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11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2.2.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가. 원 칙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마이데이터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산업임을 이해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을 원칙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고객 이익 우선)**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전송요구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도 위임받을 수 있는 등 마이데이터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이 상호 충돌할 우려(이른바 본인-대리인 문제와 유사한 상황*)가 있음. 그러므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Principal-agent problem

- 개인 또는 집단이 의사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주인이 대리인을 완벽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리인이 본인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나.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시 유의 사항

- **(과도한 가입 마케팅 금지)**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

* 제공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의 수준은 향후 감독규정에 반영될 예정

-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고객이 마이데이터서비스에 가입할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에게 다른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현황을 안내

  - **(실행방안)** 구체적 실행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 **(특화 서비스 제공 항목 표시)** 고객이 마이데이터서비스에 가입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의 특화서비스 항목을 제공받는지 등을 안내

  - **(실행방안)** 구체적 실행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다. 알고하는 동의 원칙

- **(알고하는 동의 및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전송요구 절차 등은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알고하는 동의 및 전송요구의 원칙

①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용정보주체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PC나 문서에 비하여 화면이 작은 모바일 환경이므로 작은 글자 크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

③ 한 페이지에 하나의 동의 사항을 보여주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구성하여야 함

〈예시〉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관, 거부권리 및 불이익 등 각 항목당 한 페이지

  - **(실행방안)** 구체적 실행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2.3.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가. 이해상충 방지 내부관리규정 마련(법 제22조의9②)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마이데이터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함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왜곡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항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나. 스크린 스크레이핑 금지(법 제22조의9③)

- '21.8.4. 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거나, 접근권한을 확보하거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 및 보관함으로써 고객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됨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임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대리·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정기전송 비용 부담(법 제22조의9⑥)

-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시행은 1년 유예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라.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⑩)

-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경우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

마. 전송 기록 정보주체 통지(영 제18조의6⑩)

-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함

바. 손해배상책임 이행 책임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법 제43조의3)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최소 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1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사. 금지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법 제22조의9①)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1.)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영 제18조의6①2.)

  -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3.)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4.)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5.)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6.)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영 제18조의6①7.)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영 제18조의6①8.)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9.)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10.)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1.)

-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한 후에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저장하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2.)

- 개인식별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무선 마케팅등에 활용하거나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3.)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4.)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이유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5.)

2.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가. 정보제공자의 API 정보전송 의무(법 제22조의9④)

- 정보제공자는 고객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API 방식으로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함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 ⑩)

-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은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

관련법령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PART.

0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3.1.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22

3.2. 주요 당사자 23

3.3. 대상 정보 28

3.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56

3.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59

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3.1.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가.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 마이데이터산업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으로부터 출발하므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 정보제공자의 의무 준수가 중요

- 전송요구에 따른 정보 전송의 일반적인 절차(이하 '일반전송절차'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를 따르며, 그 중 특히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수신자가 되어 정보를 전송받는 절차(이하 '마이데이터전송절차')는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따름

- 일반전송절차는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마이데이터전송절차는 금융보안원 발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및 본 가이드라인 제3장 3.3. 대상정보를 따름

나. 전송요구와 제공동의의 차이

- 제공동의에 의한 정보 제공은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고객은 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단지 동의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전송요구에 의한 정보 전송은 고객이 정보 전송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자가 이를 실행하며, 고객은 자신의 정보 전송 의지를 사업자가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단순히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 정보, 전송을 하는 자, 전송받는 자, 전송주기, 전송종료 시점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전송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 또는 기관으로의 전송요구만 가능(마이데이터 사업자 제외)

〈 제공동의와 전송요구와의 차이 〉

	제공동의	전송요구
정보주체의 지위	수동적 지위	능동적 지위
정보이전의 의지를 가지는 자	사업자 (신용정보회사등)	정보주체
정보주체가 결정하는 사항	동의 or 부동의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3.2. 주요 당사자

가. 정보제공자

-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전송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검증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구체적 범위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구 분	구체적 범위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나. 정보수신자

- 정보수신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정보수신자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구체적 범위
본인· 마이데이터사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다. 중계기관

- 마이데이터전송절차의 경우 일부 정보제공자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자
   나.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각각 별개의 업권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본다)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자
      2)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자
   다.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
4.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에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

- 중계기관은 다음과 같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라. 거점중계기관

○ 일반전송절차의 경우 일부 정보제공자는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거점중계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중계기관과 동일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다만, 해당기관이 실제로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직접 문의 필요

3.3. 대상 정보

- **(원칙)**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권리·의무 관계에서 발생한 정보이며, 정보제공자가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외됨

관련법령

- **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대상)** 구체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① 시행령 별표 1의 정보 ②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③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④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음 (영 제28조의3제6항)

  -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협의되었음 (상세사항은 [부록 1] 코드표 참고)

- 해지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제외
- 정기전송 주기에 따라 2가지로 분류

① 기본정보 : 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

② 추가정보 : 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

☞ 위에서 정한 기본 주기보다 빈번하게 정기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향후 과금 체계 논의시 반영 예정)

가. 여수신정보

- **(적용업권*)** 은행, 외은지점, 할부금융, 종합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 새마을금고, 공공 등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Note

여수신정보의 투자상품정보는 은행업권이 운영중인 '펀드' 상품을 대상으로 표준화 및 구조화가 이루어졌으며, 은행업권이 보유한, 신탁, ISA 등 다른 투자상품의 정보 전송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할부금융업권의 금융리스상품 정보는 '대출상품정보' 데이터필드를 이용하여 전송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2	고객정보 최초생성일시	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초로 고객번호 채번한 날짜 (CRM 최초등록일), 최초회원가입일 또는 고객원장이 있는 가장 빠른 일자
3	계좌번호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전체자리수)
4	최종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최종 회차 번호
5	상품명	해당 계좌의 상품명
6	외화계좌여부	해당 수신계좌가 외화계좌인지 여부
7	계좌번호별 구분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유형 구분 코드
8	계좌번호별 상태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상태 구분 코드

계좌정보 – 계좌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10	저축방법	고객이 해당 계좌에 납입하는 방법 《 요구불식, 거치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
11	예금주명	계좌 상품의 소유자 이름
12	계좌개설일자	금융회사에서 해당 계좌를 개설한 날짜
13	만기일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가 만기(종료)되는 날짜 또는 계좌 상품의 만기가 되는 날짜
14	약정액	예금주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금액
15	월 납입액	〈 정기납입 상품 정보만 제공 〉 해당 상품에 예금주가 매월 납입 신청한 금액

계좌정보 – 계좌잔액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16	현재잔액	조회 시점 계좌의 잔액
17	출금 가능액	현재잔액 중 출금할 수 있는 금액
18	적용금리	조회 시점 기준 기준금리+우대금리
19	최종납입회차	계좌에 최종적으로(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납입한 회차

계좌정보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20	거래일시 또는 거래일자	거래가 일어난 일시 또는 일자
21	거래번호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22	거래유형 (코드)	거래의 유형 구분 《 신규, 출금, 입금, 정정, 기타 》
23	거래구분	해당 거래의 구분 (ex. 입금, 출금, ATM 등)
24	거래금액	해당 계좌에서 일어난 거래의 금액
25	거래 후 잔액	거래가 일어난 후 잔액
26	납입회차	해당 거래의 납입 회차

투자상품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27	상품명	투자상품의 상품명
28	표준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펀드코드
29	납입유형 (코드)	해당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납입 유형 코드 《 임의식, 적립식, 거치식 》
30	개설일	보유 투자 상품의 계좌 개설일(신규일자)
31	만기일	보유 투자 상품 만기일

투자상품정보 – 잔액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32	잔액	투자 설정액의 수익, 손실을 감안한 금액(평가 후 잔액)
33	평가금액	잔고좌수 × (기준가/1000) (매입/환매 체결기준)
34	투자원금	금융상품 투자원금잔액 (선취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음.)
35	보유좌수	보유한 펀드의 좌수

투자상품정보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36	거래일시 또는 거래일자	해당 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의 발생 일시 또는 일자
37	거래번호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없을 경우 null, non)
38	거래유형	해당 거래의 유형 구분 코드 《 신규, 입금, 출금, 신규예약, 입금예약, 출금예약, 해지예약, 재투자, 정정, 기타 》
39	기준가	펀드 1000좌당 가격 (실 계약 시 기준가)
40	거래좌수	해당 거래의 거래좌수
41	거래금액	투자상품 거래금액
42	거래 후 잔고평가금액	거래이후 평가금액 (매입/환매체결을 기준)

대출상품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43	대출차주명	해당 대출상품의 주인이 되는 자의 이름
44	상품명	보유 대출상품의 상품명
45	대출일	해당 대출이 실행된 날짜
46	만기일	해당 대출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날짜

번호	항목	정의
47	최종적용금리	차주가 가입한 대출상품의 최종금리
48	월상환일	대출거래약정서 상 월 상환일
49	상환방식 (코드)	해당 대출의 상환방식 구분 코드
50	자동이체 기관 (코드)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의 소속 기관 코드
51	상환계좌번호(자동이체)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

대출상품정보 – 잔액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52	대출잔액	기준일자 현재 해당 대출상품에 상환해야 하는 잔여 금액
53	대출원금	해당 대출계약의 원금 전부
54	다음 이자 상환일	다음 이자 상환 예정일 ※ [할부금융업권] 차기결제일

대출상품정보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55	거래일시 또는 거래일자	해당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난 일시 또는 일자
56	거래번호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57	거래유형	해당 거래의 유형 〈〈 실행, 상환, 정정, 기타 〉〉 ※ [할부금융업권] 〈〈실행, 상환, 정정, 기타 〉〉
58	거래금액	해당 계좌에서 일어난 해당 거래(상환)의 금액
59	거래 후 대출잔액	해당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난 후 남은 잔여 대출 금액
60	거래금액 중 원금	해당 거래(상환) 금액 중 원금
61	거래금액 중 이자	해당 거래(상환) 금액 중 이자

번호	항목	정의
62	이자적용시작일	이자 계산기간의 시작일
63	이자적용종료일	이자 계산기간의 종료일
64	적용이율	해당 대출 거래(상환)시 납입한 이자의 이자율
65	이자종류 (코드)	해당 거래의 이자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 코드 《 정상이자, 연체(지연)이자, 기타 》

○ 운용리스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66	고객명	해당 운용리스 계약의 주인이 되는 자의 이름
67	상품명	운용리스의 상품명
68	대출일	해당 운용리스가 실행된 날짜
69	만기일	해당 운용리스가 만기(종료)되는 날짜
70	월상환일	운용리스 계약서 상 월 상환일
71	다음 납입 예정일	다음 월리스료 납입 예정일
72	상환방식 (코드)	해당 운용리스의 상환방식 구분 코드
73	자동이체 기관 (코드)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의 소속 기관 코드
74	상환계좌번호(자동이체)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

○ 운용리스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9	회차번호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에 회차별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
75	거래일시	해당 운용리스에서 거래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
76	거래번호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77	거래유형	운용리스 상품의 거래 유형 《 실행, 일부상환, 정정, 기타 》
78	거래금액	해당 계좌에서 일어난 해당 거래(상환)의 금액

나. 보험정보

Note

보험정보에 대한 전송요구의 주체는 보험 계약의 '계약자'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만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전송요구의 주체

- **(적용업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고객정보 – 보험상품**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2	증권번호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증권번호
3	상품명	보험 상품의 공식 명칭
4	보험종류 구분 (코드)	해당 계약의 보험종류 구분
5	계약상태 (코드)	현재 주계약의 계약상태 《 정상, 실효, 만기, 소멸 》

- **고객정보 – 보험대출상품**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6	계좌번호	해당 고객이 보유한 대출 원장의 대출 식별 번호
7	상품명	해당 대출 상품의 공식 명칭
8	계좌번호 별 구분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유형 구분 코드
9	계좌번호 별 상태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상태 구분 코드

6) 계좌번호: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집중하고 있는 항목 중 '계좌번호' 항목과 동일

보험정보 – 보험계약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0	갱신여부 (여부)	갱신형 / 비갱신형 상품 구분
11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12	만기일자	보험계약을 보장받을수 있는 일자
13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14	변액보험 여부	상품의 변액보험 해당 여부
15	유니버셜 여부	상품의 유니버셜 해당 여부
16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시작일
17	연금수령주기	실제 약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 월, 3개월, 6개월, 연단위 》
18	대출실행 가능 상품 여부	현재 가능금액이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보험 상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19	피보험자수	해당 보험 계약에 포함된 피보험자의 수
20	피보험자순번	해당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 관리 순번(주계약자는 01로 설정)
21	피보험자명	해당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 이름(첫글자와 끝글자를 제외하고 마스킹처리)

보험정보 – 특약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보험정보 – 특약정보'는 피보험자순번별 정보 전송

번호	항목	정의
20	피보험자순번	해당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 관리 순번(주계약자는 01로 설정)
22	특약명	기본담보 포함, 할인할증특약 등 제도성 특약 내용 포함
23	특약의 상태 (코드)	현재 특약의 계약상태 《 정상, 실효, 만기 》
24	특약만기일자	특약의 만기일자
25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 가입금액과 보장금액의 개념이 다름.
26	특약의 유형	해당 특약의 의무부과특약 또는 주계약 등 필수성 여부 《 필수, 선택 》

보험정보 – 보험료납입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27	납입기간구분 (코드)	납입 만기 기간 구분 《 일시납 / 년납 / 세납 》
28	납입주기 (코드)	납입 주기 구분 《월납 / 2개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일시납》
29	총 납입 횟수	보험 약정 납입기간에 따른 총 납입 횟수
30	납입기관 (코드)	보험료의 납입 방법이 '자동이체'일 경우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기관 코드
31	납입일자	보험 계약서 상, 계약자가 작성한 지정 이체 혹은 결제일자(DD)
32	납입종료일자	보험료 납입 종료일
33	납입 보험료	보험료 납입 주기에 따른 보험료 납입금액
34	자동대출납입 신청 여부 (여부)	신청 / 미신청

보험정보 – 납입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35	납입일자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일자
36	납입연월	해당 납입 내역의 유효월 → 다(多)월 납일 경우, 마지막 유효월
37	납입회차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 회차
38	실납입 보험료	고객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
39	수금방법 (코드)	고객의 보험료 납입 방법 유형 《 지로, 자동이체, 직납, 신용카드, 급여공제, 간편결제, 기타 》

자동차보험정보 – 계약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40	차량번호 (코드)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번호 (없을 시, 차대번호)
41	자동차보험 구분(코드)	해당 자동차보험의 유형 구분
42	계약자 차량명	해당 자동차보험의 차량 모델명
43	보험시기	자동차 보험의 시작일
44	보험종기	자동차 보험의 종료일
45	연령특약	전연령 / 21세 / 26세 / 30세 등..
46	운전자한정특약	누구나 / 기명1인 / 가족한정 / 부부 등..
47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
48	자기부담금 구분 (코드)	해당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 《 20%, 30% 》
49	자기부담금 금액	해당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금액

자동차보험정보 – 납입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50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금액
51	납입회차	자동차보험 보험료 납입회차 (일시불일 경우 '1')
52	실납입 보험료	해당 자동차 보험의 실제 납입금액
53	수금방법 (코드)	고객의 보험료 납입 방법 유형 《 지로, 자동이체, 직납, 신용카드, 급여공제, 간편결제, 기타 》

보험대출상품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54	대출일	대출 실행일자
55	만기일	해당 대출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날짜
56	상환방식 (코드)	해당 대출의 상환방식 구분 코드
2	증권번호	해당 대출과 연계된 보험 주계약의 증권번호*

* 35)대출형태 (코드)의 값이 '3400(보험계약대출)'일 경우에만 전송

보험대출상품 – 잔액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56	대출잔액	해당 대출상품에 상환해야 하는 잔여 금액
57	대출원금	총 대출한 금액, 대출 합계 금액
58	다음 이자 상환일	다음 이자 상환 예정일

보험대출상품 – 이자 납입 및 대출원금 상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60	거래일시	대출 상환일시
61	거래번호	거래가 이루어진 일자 별 해당 거래의 순번
62	대출원금상환액	해당 거래의 원금 상환 금액
63	이자납입액	해당 거래의 이자 납입 금액
64	이자적용시작일	이자 계산기간의 시작일
65	이자적용종료일	이자 계산기간의 종료일
66	적용이율	해당 대출 거래(상환)시 납입한 이자의 이자율
67	이자종류 (코드)	해당 거래의 이자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 코드 《 정상이자, 연체(지연)이자, 기타 》

다. 카드정보

Note

카드대출정보는 조회 시점 기준 현재 상태(current state) 정보만 전송

- **(적용업권*)** 신용카드업, 겸영여신업 등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고객정보 – 보유카드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2	카드번호	개별 카드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마스킹 처리가 된 16자리 번호.
3	카드상품명	상품명 이름이 긴 경우, 카드사 청구서 내 상품명으로 표기
4	본인/가족 구분(코드)	카드상품 계약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인지 여부

카드정보 – 카드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5	카드 구분(코드)	해당 카드상품의 종류(신용·체크(직불포함)·소액 신용결제 이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6	교통 기능(여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 여부
7	현금카드기능(여부)	ATM 등을 통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카드 기능 여부
8	결제은행(코드)	해당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거래금융회사에 부여된 코드
9	국제브랜드(코드)	해외 결제를 위한 국제카드사 브랜드
10	상품 연회비	해당 카드상품을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연간비용으로 상품설명서(금융약관) 내 명시된 비용
11	발급일자	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번호가 생성된 최근일자

포인트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2	포인트명	카드사용금액 및 사용처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대표 포인트 (또는 자사 관리 포인트)
13	잔여 포인트	기준일자 현재 금융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잔여 포인트
14	M+2월 소멸예정포인트	2개월 후 소멸예정포인트

※ 제휴 포인트를 제외*한 포인트 중, 회원의 요청에 따라 청구대금차감·결제계좌 캐시백이 가능한 포인트이면서 회원의 이용빈도가 높은 포인트

* 카드사 그룹 계열사가 공동으로 운영방식을 정하는 제휴 포인트는 제공 가능

월별 카드 이용정보 – 월별 청구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5	결제순번	청구내역이 복수 개일 경우 각 청구내역을 식별하기위한 순번
16	월별 청구금액	회원에게 청구한 해당카드의 월별 이용대금
17	결제일	결제일 2자리
18	청구년월	청구서 작성 기준월
19	결제년월일	실제 결제일
20	결제 유형	해당 결제의 신용/체크 구분 《 신용/체크/신용체크혼용 》

월별 카드 이용정보 – 청구 상세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21	사용일시 또는 사용일자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일시 또는 일자
22	이용금액	건별 이용 금액
23	통화코드	ISO4217 준용,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KRW 적용
24	사용처 정보① (가맹점명)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곳의 명칭

번호	항목	정의
25	신용판매 수수료	일시불·할부거래, 해외 이용수수료 및 연체수수료 등 일시불 거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수수료
26	전체 할부회차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리금의 전체 회차
27	현재 할부회차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리금의 현재회차
28	할부 결제 후 잔액	기준일 현재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금의 잔액
29	상품구분 (코드)	상품구분 《 일시불, 신판할부, 현금서비스 》

○ 일별 카드 이용정보 – 일별 결제예정 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30	결제순번	청구내역이 복수개일 경우 각 청구내역을 식별하기위한 순번
31	결제예정일	해당카드(번호)를 조회하는 시점에 대금을 납부해야할 가장 가까운 예정 날짜
32	결제예정금액	해당카드(번호)를 조회하는 시점에 대금을 납부해야할 가장 가까운 예정 날짜에 출금예정인 금액

○ 일별 카드 이용정보 – 승인 상세정보 (건별 카드 이용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33	승인번호	카드 승인시 각사에서 발행한 번호
34	결제상태	해당 승인번호의 조회시점 결제상태 《 승인/승인취소 》
35	결제유형	해당 결제의 신용/체크 구분 《 신용/체크 》
36	사용일시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짜와 시간 (YYYYMMDD hhmmss)
37	취소일시	승인취소 시간(YYYYMMDD hhmmss)
38	사용처 정보① (가맹점명)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곳의 명칭
39	이용금액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 (할부 시 전체금액으로)

번호	항목	정의
40	[국내승인]전체 할부회차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리금의 전체 회차
41	[해외승인]결제(승인) 국가코드	카드 승인 국가의 국가코드 (ISO 1366-1 alpha-2 준용)
42	[해외승인]결제(승인) 시 통화코드	카드 승인 시 선택한 통화코드 (ISO 4217 준용)
43	[해외승인]원화	원화로 환산한 금액

카드대출정보 - 대출 목록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44	리볼빙 (여부)	정보주체(고객)가 리볼빙 실행 중이거나, 해지했지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True 회신
45	단기대출 (여부)	정보주체(고객)가 단기대출 실행 중이거나, 해지했지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True 회신
46	장기대출 (여부)	정보주체(고객)가 장기대출 실행 중이거나, 해지했지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True 회신

카드대출정보 - 리볼빙 이용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48	신청일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한 일자
49	최소결제비율	월별로 금융회사에 결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
50	최소결제금액	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리볼빙 수수료 리볼빙 대상 외 금액의 합계
51	약정결제비율	회원이 카드사에 리볼빙 이용을 위해 선택한 결제비율
52	리볼빙 이월잔액	월별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월잔액 (청구서기준)

카드대출정보 – 단기대출 이용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53	이용일시	해당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을 이용한 날짜와 시간
54	이용금액(취급액)	해당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을 이용한 금액 (매출이 발생한 금액)
55	결제예정일	해당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 대금이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짜
56	이자율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자율

장기대출 이용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57	대출일시	해당 대출이 실행된 날짜와 시간 (확정일자로 관리)
58	일자의 대출회차	동일 대출일에 다수의 대출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순번(key)
59	대출종류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의 종류 구분
60	상품명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의 이름(이지론, 직장인론 등)
61	이용금액	해당 대출계약의 원금 전부
62	이자율	장기대출상품(카드론) 이용에 따른 이자율
63	만기일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날짜
64	장기대출 잔액	기준일자 현재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에 상환해야 하는 잔여 금액
65	상환방법(코드)	장기대출상품(카드론)을 상환하는 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66	상환액 중 이자	해당 상환된 금액중 이자

라. 금융투자정보

○ 고객정보 – 보유계좌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금융회사별 코드
2	계좌번호	증권 계좌번호
3	계좌명	계좌 소유자의 실명 (예: 홍길동)
4	계좌종류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5	계좌상태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 계좌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6	계좌개설일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일자 주1) YYYYMMDD 6자리로 표기
7	세제혜택 적용여부	해당 계좌 세제혜택 적용여부 주1) 세재혜택 적용 계좌: 'Y' 주2) 세재혜택 미적용 계좌: 'N'
8	예수금	계좌별 현금 잔액 주1) 조회시점 기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총 잔액 주2) 미수 발생 시, 미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이너스 형태로 표기 (예: -2000)
9	신용 융자	해당계좌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매수대금의 총액 주1) 신용 약정을 하지 않은 계좌: '0'으로 표기 주2) 신용 약정을 하고 상환해야할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10	대출금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총 합계 주1) 조회시점 기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체 담보 대출 금액

계좌정보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1	종목명(상품명)	거래가 발생한 상품의 명칭
12	종목코드(상품코드)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13	거래일시	거래가 발생한 기준일(시) 주1) 입출금 거래인 경우: YYYYMMDDHHMMSS 주2) 입출금이 아닌 모든 거래: YYYYMMDD
14	거래종류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15	거래종류 상세	상세 거래 종류 (코드가 아닌 상세 거래 종류 명)
16	거래수량	해당 종목이 본 거래에서 거래된 총 수량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수량이 아닐 수 있음)
17	거래단가	해당 종목이 본 거래에서 거래된 단위 가격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단위 가격이 아닐 수 있음)
18	거래금액	해당 종목이 본 거래에서 거래된 총 금액
19	정산금액	거래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 주1) 거래대금 – 세금 – 증권사 수수료
20	거래 후 잔액	조회 대상 기간 마지막 거래 이후 해당 계좌의 현금 잔액(예수금)

상품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21	상품종류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22	상품종류 상세	CMA, RP, CD, ETF 등 상세 상품 종류 (코드가 아닌 상품종류 상세 명)
23	상품코드(종목코드)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24	상품명	해당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

상품정보 – 상세정보1 (연금 외 모든 상품)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25	매입금액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총 매입 금액 (거래금액 산정 기준과 동일)
26	보유수량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수량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수량이 아닐 수 있음)
27	매도가능수량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수량 중 매도가 가능한 수량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수량이 아닐 수 있음)
28	평가금액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평가 금액

상품정보 – 상세정보2 (연금상품)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29	가입일자	해당 연금상품 가입일자(해당상품 포함계좌에 최초 납입된 일자)
30	납부총액	조회 시점 기준 납부된 총액
31	기출금액	조회 시점 기준 출금한 총액
32	최종납입일	실제 최종 납입한 일자(YYYY.MM.DD)
33	연금기수령액	조회시점 기준 연금 수령총액

마. 전자금융업 정보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2	회원명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회원의 성명
3	가입일	회원가입일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일– 무기명, 기명)
4	Sub key	복수계정을 구별할 수 있는 Key (ex. 고객ID, 권면번호)
5	계정식별값	복수의 계정일 경우 정보 주체가 각각의 계정을 확인 할 수 있는 값 Ex) 마스킹처리된 ID, 닉네임 등

번호	항목	정의
6	계정상태(Sub key 별)	계정의 현재 상태 《 활동(사고, 정지 등), 비활동(휴면 등) 》
7	결제수단 등록 여부	등록결제수단의 존재 여부
8	결제수단 기관 (코드)	고객이 추심이체 출금동의 완료/유지 중인 은행의 기관코드
9	결제수단 식별키	해당 결제 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값(계좌번호, 카드번호(마스킹) 등)
10	Primary 여부	해당 결제 수단이 primary 지정 여부

선불발행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1	권면명	권면을 식별할 수 있는 권면 이름
12	총잔액	선불전자지급수단 총 잔액
13	충전포인트 잔액	연결된 은행계좌를 통하여 충전한 금액중 잔액
14	적립포인트 잔액	자사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적립된 금액중 잔액
15	적립예정	향후 일정기간내 적립 예정인 금액
16	소멸예정	M+2개월내 소멸 예정인 금액
17	권면한도(Sub key 별)	회원에게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한도(무기명: 1, 기명: 2)*

* 1) 무기명: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무기명식 권면한도(현재 50만 원)
* 2) 기명: 실지명의가 확인된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행한 기명식 권면한도(현재 200만 원)

선불발행정보 – 자동충전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8	충전계좌 기관 (코드)	충전/송금 거래시 상대 금융회사의 코드
19	충전계좌	자동충전시의 출금대상 은행계좌 (연결계좌 목록 중 하나)로 은행명, 계좌번호
20	충전조건 (코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자동충전하기 위한 조건
21	기준날짜	충전 기준 날짜(DD)
22	기준금액	하한 기준금액
23	충전금액	충전될 금액

거래내역 – 선불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24	거래유형 (코드)	전급업 거래유형(코드)의 선불금융거래 중 해당 거래의 거래유형
11	권면명	권면을 식별할 수 있는 권면 이름
25	거래일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일시 (YY-MM-DD hh:mm:ss)
26	거래금액	해당 거래의 금액
27	거래 후 잔액	해당 거래 후 잔액
28	기관 (코드)	거래 대상 금융회사의 코드
29	결제수단 식별키	1. 카드: 카드번호(마스킹포함), 2. 은행: 계좌번호, 3. 선불: 식별키
30	거래메모	해당 거래의 부가 정보 ex)상품권명, 포인트명, 기타, 송금인/수취인명, 적립서비스명

거래내역 – 결제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31	결제유형	전급업 거래유형(코드)의 결제내역 중 해당 거래의 거래유형
32	주문번호	해당 결제내역의 주문번호
33	결제일시	결제 또는 결제취소 일시(YY:MM:DD:HH:MM:ss)
34	결제금액	결제 또는 결제취소 총 금액
35	결제수단 기관 (코드)	거래 대상 금융회사의 코드
36	결제수단 식별키	1. 카드: 카드번호(마스킹포함), 2. 은행: 계좌번호, 3. 선불: 식별키
37	할부개월	할부개월수
38	가맹점명	결제 또는 결제취소 가맹점명
39	상품(구매)제목	원장에 저장된 구매 내용의 제목 title
40	주문내역정보 (코드)(※)	해당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분
41	결제방법 (코드)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등의 구분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으로 결제하는 경우 원장표기명 《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

※ 주문내역정보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내역정보를 아래의 12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개방하고 처리시 최소 수집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 준수 (상세내용은 [부록 1] 코드표 참고)

* 예 : 책상용 의자 구매 → 생활/가구, NIKE신발 구매 → 패션/의류

구분	카테고리 포함 품목 예시
가전/전자	가전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포함)
도서/문구	서적, 사무 문구
패션/의류	의복, 신발, 가방, 패션용품 및 악세서리
스포츠	스포츠 용품
화장품	화장품
아동/유아	아동/유아용품
식품	음식료, 농축수산물
생활/가구	생활용품(꽃 포함), 자동차용품, 가구, 애완용품
여행/교통	여행 용품, 교통 관련 결제
문화/레저	영화표 등
음식	음식 배달
e쿠폰/기타서비스	기프티콘, 상품권 등

바. 개인형IRP 정보

개인형IRP 정보 – 목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2	상품명	해당 IRP 상품의 명칭
3	계좌번호	해당 고객이 보유한 개인형 IRP 계좌번호
4	계좌번호 별 상태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상태 구분 코드

개인형IRP 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5	적립금액	납입원본(납입후 이자 재예치후 원금) (계좌 전체 기준)
6	계좌평가금액	조회 시점 전일자 기준의 이자 등 운용수익이 반영된 평가금액 (계좌 전체 기준, 수수료 차감 금액)
7	사용자부담금	적립금액 중 사용자 부담금
8	가입자부당금	적립금액 중 가입자 부담금
9	개설일	계좌 개설일
10	최초입금일	개인형IRP 계좌에 대한 최초 입금일

개인형IRP 정보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1	거래일시	해당 거래의 발생 일시
12	거래구분 (코드)	해당 거래의 거래 유형 《 입금, 지급 》
13	거래금액	해당 거래의 금액

개인형IRP 정보 – 개별운용상품 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4	개별운용상품	금융회사의 원장6에 기록되어 있는 개별운용상품의 명칭 ex) 00은행 정기예금 1년 등
15	상품유형 (코드)	개별운용상품의 상품 유형 《 원리금 보장(예금), 원리금 비보장(펀드) 》
16	평가금액	기준일자의 이자 등 운용수익이 반영된 평가금액(개별운용상품 기준)
17	투자원금	납입원본 또는 납입후 이자 재예치후 원금(개별운용상품 기준)
18	보유좌수	개별운용상품이 보유한 좌수
19	신규일	개별상품 신규일(재예치일)
20	만기일	개발상품 만기일
21	약정이자율	정기예금 상품의 이자율

사. 통신업 정보

Note

통신업권의 전송요구권 행사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

- 통신료 정보에서는 실사용자와 납부자의 구분이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어려움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2	계약관리번호	각 서비스별 고유값으로 PrimaryKey로 이용
3	가입번호	휴대폰번호 / 고객번호 등 (마스킹 처리)
4	통신구분	휴대폰 / 집전화 / 인터넷
5	가입구분	정상 / 고객정지 / 연체정지

청구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6	청구대상년월	청구정보 호출을 위한 청구정보의 대상연월
7	가입번호	휴대폰번호 / 고객번호 등 (마스킹 처리)
8	통신구분	휴대폰 / 집전화 / 인터넷
9	청구금액	회원에게 청구한 금액
10	납부예정일자	청구상 납부 요청일자

납부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1	납부연월	납부정보 호출을 위한 납부정보의 대상연월
12	납부금액	회원이 실제 납부한 금액
13	납부수단	고객이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는 수단 《 자동납부, 지로, 기타 》

결제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4	이용일시	소액결제를 이용한 일시
15	가맹점명	PG사명
16	결제금액	해당 소액결제의 이용금액
17	결제상품명	소액결제 상세

아. 보증보험 정보

Note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보증보험 상품은 데이터의 구조가 일반 보험상품과 상이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화를 개별 진행함.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번호	항목	정의
1	기관 (코드)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식별 코드
2	증권번호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증권번호
3	상품명	보험 상품의 공식 명칭
4	보험종류 구분 (코드)*	해당 계약의 보험종류 구분
5	계약상태 (코드)	현재 주계약의 계약상태 《 정상(계약유지) 》

* 보증보험정보의 보험종류 구분 (코드)는 '20) 보증(신용)보험'으로 고정

보증보험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6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7	종료일자	보증보험계약의 종료일자
8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9	피보험자수	해당 보험 계약에 포함된 피보험자의 수
10	피보험자명	해당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 이름
11	납입기간구분 (코드)	납입 만기 기간 구분 《 일시납, 분납 》
12	총 납입 보험료	해당 상품에 납입해야하는 총 보험료 납입액

보증보험정보 – 보험료 납입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번호	항목	정의
13	납입일자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일자(YYYY.MM.DD)
14	납입회차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 회차
15	실납입 보험료	고객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
16	수금방법 (코드)	고객의 보험료 납입 방법 유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지불, 지점출수납, 기타 》

자. 공공정보 ☞ 정기전송 미정

-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아래 증명서 항목의 행정정보 및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협의 중 (세부 항목 추후 안내)

구분	증명서 명
지방세 관련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국세 관련	국세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건강보험·공적연금 관련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3.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 **(전송요구의 내용)** 고객은 다음 사항을 특정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

전송 요구 사항	비 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정보의 항목 • 정보 전송요구 기간 (From A to B)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보수신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요구 / 미요구 •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최대 1년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통합조회, 금융상품추천 등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 요구시) • 개인신용평가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전송 요구시) • 기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선택하도록 함

- **(전송요구의 방법)** 고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단으로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을 요구

- 서면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 **(보안·비밀 계좌 정보 전송)** 보안 계좌, 비밀 계좌 등과 같이 고객이 정보제공자에 비대면 정보 조회 금지를 요청한 정보(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에서 제외됨. 단,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등을 이용하여 대면으로 해당 정보에 대해 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기를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이를 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대면 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각사 지침에 따라 보안계좌, 비밀계좌 전송요구 수행

- **(전송요구의 철회)** 고객은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방법은 전송요구의 방법과 같음

- **(정기전송)** 고객은 정보제공자에게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송요구의 중단)** 정보제공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음

전송요구 거절, 정지·중단 사유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거절시 고객 통지)** 전송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자가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3.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가. 마이데이터전송절차

- 마이데이터전송절차는 금융보안원 발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을 따름

나. 일반전송절차

정보제공자가 ① 고객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와 ② 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를 구분

① 고객이 정보수신자인 경우 : PDS에 정보 전송(검토 중)

- 고객이 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PDS에 정보를 전송하고, 고객은 PDS를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고 정보를 관리(PDS = 고객)

〈일반적 전자우편서비스와 차이점〉

	일반적 전자우편	PDS
보안 수준	전자우편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	PDS에 접근시 본인인증 절차 사용될 예정
타인 전송 가능성 가지는 자	고객이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본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로 개인신용정보가 전송될 수 있음	본인인증된 PDS에 정보가 전송되므로 타인에게 전송될 가능성은 없음 (접근매체 탈취 등 불법적 접근은 제외)

PDS(Personal Data Storage, Store, Space) 개요

- PDS란 정보주체가 본인의 ①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②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있게 보장

  ① (저장) 흩어진 본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안전한 저장소(DB)에 저장

  ② (관리) 통합하여 저장한 데이터를 전송요구·제3자 제공·삭제 등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관리·활용

- 최근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의 조화를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PDS 도입·활용 검토가 활발*

  * PDS는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용

  - PDS는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을 넘어서 정보 주체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자기결정권 강화)의 맥락에서 중요성이 증대

- 국가별로 금융 산업 환경, 법제 기반 등 특수성에 따라 PDS 등 도입 수준, 구축·운영 방식 등이 상이

  - PDS와 유사한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으로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DA(Personal Data Account), PCB(Personal Cloud Butler) 등 유사 시스템이 운영 중

② 기관이 정보수신자인 경우 : <u>업권별 거점중계기관*을 경유하여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검토 중)</u>

- 신용정보원, 코스콤, 금융결제원이 각각 3개 업권을 나누어 고객의 전송요구와 이에 따른 정보전송을 중계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점중계기관이 고객의 전송요구를 정보제공자로 전달하고,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수신자로 정보전송을 중계

기관간 정보 전송 절차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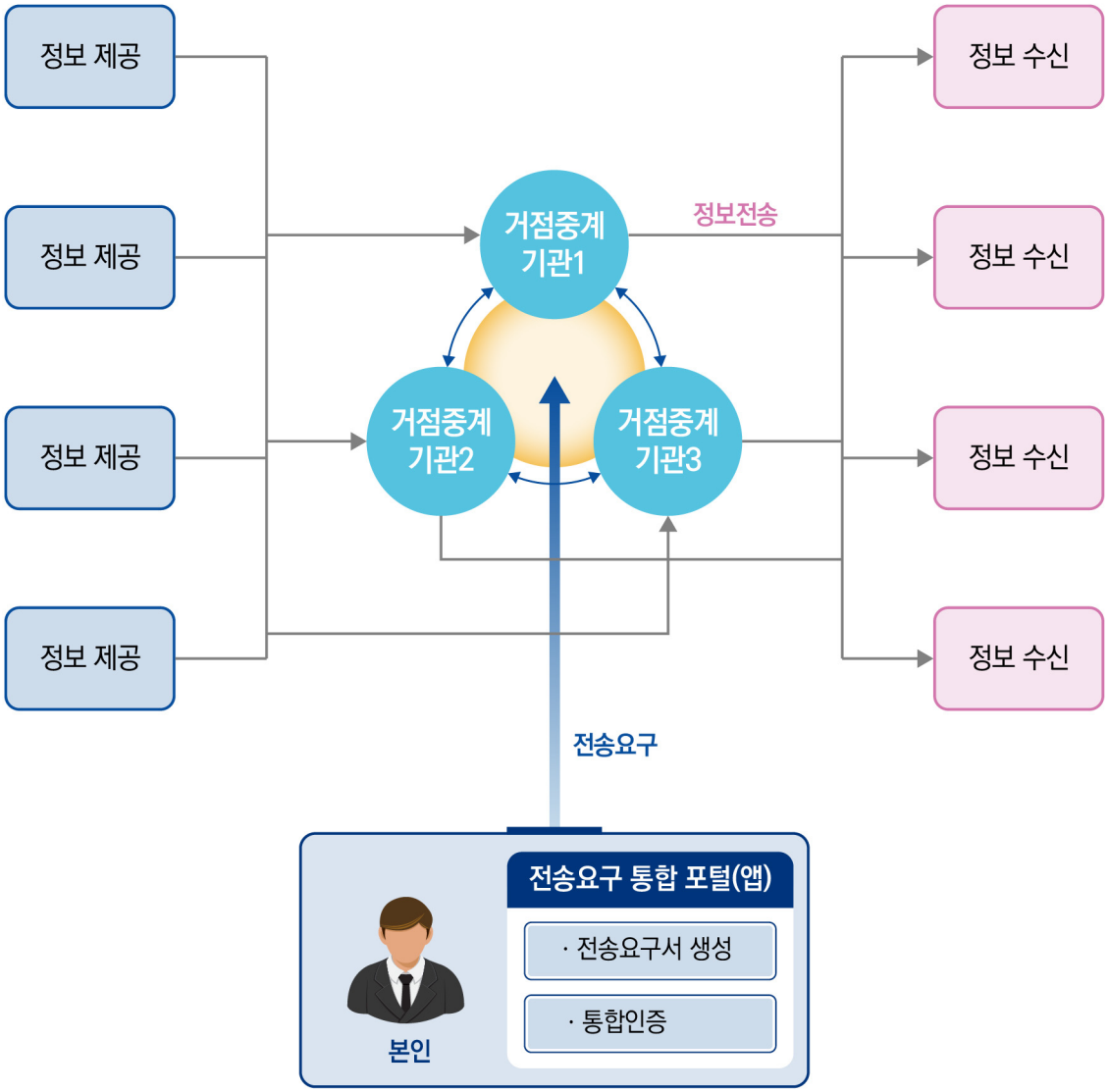

www.kcredit.or.kr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PART.

04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4.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64

4.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65

4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4.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 **(개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란 마이데이터산업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행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시행령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5.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가. 참여기관 관리

- **(역할)** 마이데이터산업을 구성하는 고객①, 마이데이터사업자②, 정보제공자③, 중계기관④의 등록 및 데이터 송·수신자 인증을 포함한 참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관리

  - 지원센터 내 참여주체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마이데이터산업 초기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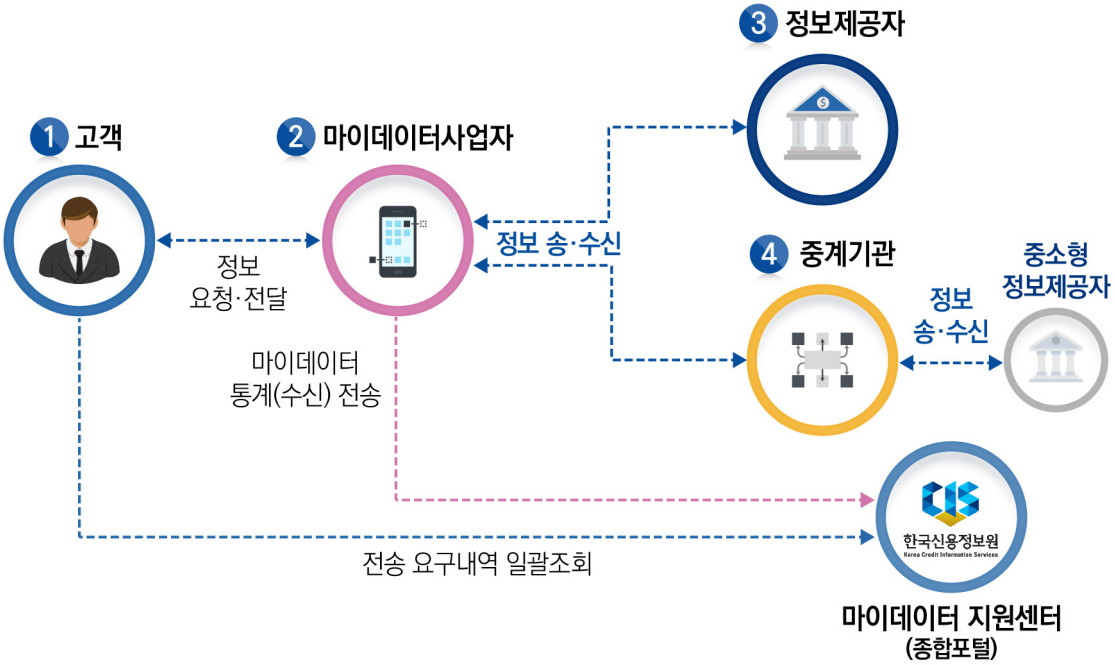

나. 정보항목 선정 및 표준화

- **(역할)** 워킹그룹에서 선정한 전송대상 신용정보항목 이외에 마이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관리되어야 할 항목을 지속적으로 반영

  - 여·수신①, 보험②, 카드③, 금융투자④, 전자금융⑤, 통신⑥, 기타⑦ 분과 회의체를 구성하여 항목선정 및 표준화 등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
    - 항목관련 의견은 업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청취
    - 분과 회의는 기술규격(금융보안원) 관련사항을 포함

  - 분과별 참여기관 구분(안)
    ① 여·수신 (국내은행, 외국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등)
    ② 보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③ 카드 (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④ 금융투자 (증권사, 자산운용·선물사)
    ⑤ 전자금융 (전자금융업자 등)
    ⑥ 통신 (기간정보통신업자)
    ⑦ 기타 (공공기관, 대부 등)

다. 과금체계 운영방안 관리

- **(역할)**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기적 정보수신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적정한 과금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과금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과금 모델)** 마이데이터산업통계가 충분히 수집되었을 때 전문기관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적 과금모델 개발

- **(과금 정산)** 과금 적용 전 참여기관 간 수수료 정산방법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적정 방안 검토
  -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①, 중계기관과 마이데이터사업자 간②, 중계기관과 중·소형 정보제공자 간③ 과금 정산 이슈

- **(과금 주기)** 마이데이터산업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간·월간·일일 정산 방안에 대해 검토

- **(회의체 논의)** 수수료 관련 참여기관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회의체 구성·운영 고려

- **(기타)** 수수료 미납 처리·해결방안 등 이슈발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검토

라. 민원·분쟁사항 관리

- **(역할)** 고객 민원 및 참여기관 간 분쟁발생 관련 의견을 접수하여 금융당국과 함께 문제해결방안을 찾고, 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채널 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포털(홈페이지)에서 고객 민원 및 참여기관 분쟁사항에 대해 접수

  - **(오프라인 채널 관리)**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정기 협의체의 안건으로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공유·논의를 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감한 이슈사항은 금융당국에 제안하여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마. 정기협의체 운영

- **(역할)**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에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참여기관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기 회의체를 구성·운영

  - 회의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의결사항은 정책당국에 전달하여 추후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회의체 구성)** 핵심 이슈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검토

① **중요 의사결정 회의체**
- 금융당국 주관으로 필요시 운영

② **데이터표준화 및 과금 회의체**
- 데이터별 구분하여 회의체 운영
- 산업통계를 토대로 회의체 운영

③ **중계기관 회의체**
- 중계기관 이슈 발생시 회의체 운영

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역할)** 지원센터에서 참여기관 및 대국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운영
  (상세내용은 [부록 2]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서비스 상세 참고)

- **(주요 기능 구성)**

- **(참여기관* 등록·관리)** 마이데이터산업을 구성하는 참여기관이 종합포털에 가입을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등록·관리하는 등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전 필수 절차

*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본인확인기관(통합인증) 등

- **(서비스 자격증명 발급·관리)**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의 서비스 자격증명(Client ID/Secret)을 발급하고 관리

- **(지원서비스 전용 접근토큰 발급·관리)** 종합포털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포털과 마이데이터사업자/정보제공자 간의 접근토큰을 발급하고 관리

- **(마이데이터서비스 실환경 테스트 지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발한 서비스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와의 실환경에서 사전 테스트를 지원

- **(통계정보 제공)**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종합포털에 집중하는 API 전송내역을 활용하여 정기적 전송에 대한 과금모델 개발 및 각종 산업통계·지표 등을 제공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내역 통합조회)** 고객이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마이데이터서비스에서 요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내역을 일괄 통합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자 서비스 상태 조회)**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종합포털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API 전송시스템 상태(정상, 시스템점검, 장애 여부 등) 조회 가능

- **(마이데이터 소개 및 고객지원서비스)** 마이데이터 생태계 및 참여기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소식 안내 및 각종 민원, 분쟁사항의 접수·처리를 지원

www.kcredit.or.kr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PART.

05

Q&A

5.1. 마이데이터산업 Q&A 72

5.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Q&A 83

5.3. 기타 90

5 Q&A

5.1. 마이데이터산업 Q&A

가. 정보수집

궁금해요?

Q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린스크레이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스크레이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현재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스크린스크레이핑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수집 중으로, 정보가 해당 핀테크 업체를 경유하여 당사로 집적되는 구조인데 이런 방식의 영업이 가능한가요?**

A 신용정보법(제22조의9)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경유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의 제5항)

※ 다만, 개정법 부칙(제1조)에 따라 정보수집 방식을 제한한 규정의 시행을 '21.8월로 유예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동안에는 스크레이핑(제3자 경유 포함)을 통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Q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제3자 제공 동의 또는 오픈뱅킹 API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은 불가능한가요?**

A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집하는 방식(스크린 스크레이핑 등)은 금지**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고객으로부터의 개별 정보제공동의, 오픈뱅킹 API활용 등

나. 정보 제공 및 활용

궁금해요?

Q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해야 하나요?

A 신용정보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의 정보**에 대해 정보수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일 경우에는 API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Q 전송요구권 시행 후 API 전송시스템 구축전이라면, 전송요구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송요구권 시행은 2021년 8월 4일까지 **계도기간 형태로 유예**될 예정이며, 2021년 8월 4일부터는 **API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Q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허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A 수집 당시 동의를 받은 수집 목적에 **마이데이터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A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해당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단순히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통합 조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가요?

A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와 제휴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 채널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Q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A 마케팅 목적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오픈뱅킹, 어카운트인포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인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필수적으로 득해야 하는 것인가요?**

A **금융거래실명법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없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 업무범위 등

궁금해요?

Q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겸영·부수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나요?

A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외에 개별 업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용정보법이 허용하더라도 **개별 업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업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을 거쳐 영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업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외에 **해당 업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을 받을 경우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겸영업무 중 타 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지체 없이 허가·등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고유 서비스 채널없이 제3자의 채널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서비스 채널(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고유한 서비스 채널 없이 IT 설비 위탁 등의 형태로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 채널만을 이용한 업무수행은 불가합니다.

Q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유의 서비스 채널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본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비스 채널**이 있으면 고유의 채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 업무와 관련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어플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Q **타 금융그룹과의 제휴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사 또는 소속 금융그룹 계열사 금융상품만 추천하는 방식의 영업도 허용되는 것인가요?**

A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예)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금지 등(시행령 제18의6제1항)

Q **금융상품 알고리즘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A **회사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Q **겸영업무로 허용된 투자자문·일임업은 자본시장법상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통한 영업(로보어드바이저)에 한정되는 것인지?**

A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투자자문·일임업으로만 영위 가능**합니다.

Q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를 이미 영위하고 있는 비금융사는 허가와 별도로 겸영업무 영위를 신고해야 하는지?**

A 허가 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겸영업무는 허가 신청서를 통해 겸영업무 영위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Q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겸영 및 부수업무는 열거주의인지, 아니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거된 겸영·부수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향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마이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확인 필요

A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신용정보법 및 하위규정에 제시된 업무에 제한(열거주의)** 됩니다.

라. 마이데이터서비스

궁금해요?

Q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API 서비스는 24시간 가동하여야 하나요?**

A 24시간 365일 가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정보전송 요구를 철회 혹은 정정하려는데 앱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전송 요구내역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전송 요구내역을 통합조회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Q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자사 Open API 서비스 구축 후 무료 제공기간은 얼마인가요?**

A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기적 정보전송에 대해서는 실비 개념의 과금 산정이 가능하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년 간 과금**이 **유예**됩니다.

마. 기타

궁금해요?

Q 허가의 유지요건 및 정기적 평가·감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용정보법은 **물적 설비 유지를 허가 유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14조의 **허가취소 사유 발생시에는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업무는 상시 감독 및 검사 대상입니다.

Q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의 보장 관련, 기존에 금융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A 신용정보법(제43조)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적립금 내지 보험가입(또는 공제 가입)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보장범위가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정한 손해배상을 포괄한다면 기존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를 Key 값으로 하는 것인가요?
주민등록번호가 Key값이 아니라면 식별값은 무엇인가요?**

A **고객 식별 값은 CI**가 이용될 예정입니다. CI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을 허용해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해킹 같은 보안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은 안전한가요?**

A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 구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가 부여**되며, 마이데이터서비스에 대한 **보안검증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얻은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콜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마케팅 목적**(예 : 콜 마케팅 등 out-bound 영업행위)**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동의"**는 **고객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원하는 용도 외**에 **"마케팅"용도로 활용된다는 점, "마케팅" 용도의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시적으로 받은"** 것은 온라인 방식 등을 포함하여, **고객이 마케팅 용도 활용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마케팅 목적 사용에 동의한 **고객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업은 마케팅 용도 활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5.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Q&A

가. 전송정보

Q A

궁금해요?

Q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송요구 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에 열거된 개인신용정보 항목**입니다.

Q **전송요구권 행사 시 전송의무가 있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나요?**

A 조회시점으로부터 **5년까지의 데이터는 즉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4항에 따르면,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는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하게 되어 있으며, 5년 이전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나. 정보수집·활용·보관

궁금해요?

Q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니더라도 고객의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타기관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가요?

A

신용정보법제33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신용정보를 **전송요구에 따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용하거나 제공·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이용 또는 제공·활용이 신용정보의 처리 측면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처리" 행위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예 : 통합조회)**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고객의 요청하에 전송받은 타사데이터의 보관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A

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 따르면,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 (수집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 단,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경우 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않고 **고객의 의사에 따라 삭제** 등의 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정보 항목

궁금해요?

① 여수신정보

Q **대출상품의 범위가 '대출상품', '신용공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가요? (ex. 가계지급보증)**

A 전송요구권에 의한 전송 정보에 보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공여 중 명확한 '대출'에 대한 정보만 전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보험정보

Q **외화납입 보험의 금액에 대한 API 분류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보험 납입 정보 – API 납입 금액에 대한 '통화코드' 필드가 있습니다. 해당 외화의 통화 코드를 사용하여 전송 가능합니다.

Q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이 정상 유지되는 상태의 정보 전송**

A 종신보험 만기 후 연금보험으로 전환되는 형태 등, 기존의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주계약의 상태를 해지가 아닌 '06) 소멸'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를 전송합니다.

Q 보험료 분할 납입 건에 대한 정보 전송

1. 특정 월 보험료 분할납입의 경우, 납입 건별로 데이터를 전송하되 납입 연월은 동일 데이터 전송(해당 월)합니다.

2. 보험료 선납의 경우 납입은 1건이나, 해당 건을 해당월 납입 분과 선납 분으로 나누어 2건으로 전송합니다. 즉, 납입일자는 같으나, 납입연월과 실납입 보험료가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A

③ 카드정보

Q 카드식별자만으로 키 값 사용이 가능한가요?

카드식별자만으로 키 값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A

Q 카드식별자의 부여기준이 있나요?

카드식별자는 표준 API 규격(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데이터 보유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Primary Key입니다.
타업권에서는 계좌번호 등을 Primary Key로 사용하고 있으나, 카드업권의 경우 카드번호가 마스킹 처리되어 Primary Key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식별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A

Q **마이데이터 설계서상 정상카드만 회신한다고 되어있는데, 정상카드의 정확한 의미(분실,정지된 카드도 포함인지 등)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청구정보조회에서는 정지카드도 포함되나요?**

A '정상'의 정확한 의미는 '해지되지 않은' 입니다. **분실, 정지, 사고 등의 상태인 카드도 전송 대상이 맞습니다.**

Q **카드식별자는 카드번호가 유추되지 않는 값인가요?**

A 카드-002, 카드-007, 카드-008 등 카드식별자를 Primary Key로 사용하는 API들의 경우 {card_id}가 UR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노출이 되어도 무방한 값이어야 하므로 **카드식별자로 카드번호 유추가 불가해야 합니다.**

④ 전자금융업 정보

Q **개별운용상품의 평가금액 기준일자는 언제인가요?**

A 모든 데이터의 기준일자는 '조회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IRP의 경우 전일 또는 00시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운용상품 평가금액의 기준일자는 **'조회 시점 당시 가장 최근에 평가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를 이용한 복합결제의 경우 정보 전송 방법

A 복합결제(총10,000원=카드5,000원+계좌이체3,000원+선불전자지급수단2,000원)가 진행되었을 경우, 3건의 개별 결제로 간주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결제금액과 결제수단 기관(코드), 결제수단 식별키를 제외한 데이터들은 동일 값을 전송합니다.

Q 거래유형 코드 중 '포인트'의 의미

A 선불거래내역에서의 포인트는 '선불을 충전하기 위해 사용된 선불로 분류되지 않은 다른 모든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반면, 결제내역에서의 포인트는 '선불로 분류된 포인트'이며, '실제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Q '포인트'를 사용한 할인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A 전송요구권의 정보 전송 항목들에 대해 금융거래로서의 '결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한 할인의 개념은 고객의 입장에선 '할인'의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결제'로 분류, '포인트를 사용한 결제(코드:6103)'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해요?

Q **트래픽 과다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신용정보법 시행령(제28조의3제5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Q **전송요구권에 의하여 정보를 전송받은 정보수신자는 전송받은 신용정보 내역에 관한 기록을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하나요?**

A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8조의6 10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통지의무가 있으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아닌 정보수신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5.3. 기타

궁금해요?

Q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위워크 을지로) 8층(8-118호)
문의전화 : 02-3705-5900
이메일 : mydata@kcredit.or.kr

Q 전송요구권 관련 업권별로 지정된 거점중계기관만을 이용해야하나요?

A

전송요구권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중계기관별(거점기간 포함) 담당 업권을 지정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PART.

06

부록

1. 코드표 92

2.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서비스 상세 102

6 부록

부록 1. 코드표

가. 계좌번호별 유형 및 상태 구분 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table>
<tr><th colspan="3">계좌 유형</th><th>구분 코드</th><th>상태 구분 코드</th></tr>
<tr><td rowspan="4">수신
상품</td><td colspan="2">자유입출식</td><td>1001</td><td rowspan="4">《 활동(사고 포함),
비활동 》</td></tr>
<tr><td colspan="2">예금</td><td>1002</td></tr>
<tr><td colspan="2">적금</td><td>1003</td></tr>
<tr><td colspan="2">기타</td><td>1999</td></tr>
<tr><td rowspan="5">투자
상품</td><td colspan="2">수익증권</td><td>2001</td><td rowspan="5">《 활동(사고 포함) 》</td></tr>
<tr><td colspan="2">신탁</td><td>2002</td></tr>
<tr><td rowspan="2">ISA</td><td>신탁형 ISA</td><td>2003</td></tr>
<tr><td>일임형 ISA</td><td>2004</td></tr>
<tr><td colspan="2">기타</td><td>2999</td></tr>
<tr><td rowspan="10">대출
상품</td><td rowspan="3">신용대출</td><td>신용대출</td><td>3100</td><td rowspan="10">《 활동(사고 포함) 》</td></tr>
<tr><td>학자금대출</td><td>3150</td></tr>
<tr><td>전세자금대출</td><td>3170</td></tr>
<tr><td rowspan="7">담보대출</td><td>예·적금담보대출</td><td>3200</td></tr>
<tr><td>유가증권* 담보대출
* 주식, 채권, 펀드 등</td><td>3210</td></tr>
<tr><td>주택담보대출</td><td>3220</td></tr>
<tr><td>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
* 토지, 상가 등</td><td>3230</td></tr>
<tr><td>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td><td>3240</td></tr>
<tr><td>보금자리론</td><td>3245</td></tr>
<tr><td>학자금(지급보증담보)대출</td><td>3250</td></tr>
<tr><td>주택연금대출</td><td>3260</td></tr>
</table>

계좌 유형			구분 코드	상태 구분 코드
대출 상품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 보증서, 질권 등	3270	《 활동(사고 포함)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3271	
		기타 담보대출	3290	
		보험계약대출	3400	
	할부금융	신차 할부금융	3500	
		중고차 할부금융	3510	
		기타 할부금융	3590	
	리스	금융리스	3700	
		운용리스	3710	
	기타	채권인수전문기관 보유	3999	
개인형IRP			4001	《 정상 》

나. 상환방식 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코드	구분
01	만기일시상환
02	원금균등분할상환
03	거치식-원금균등분할상환
0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05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06	만기지정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07	만기지정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08	한도거래
09	기타(직접산정)
10	거치식 만기지정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11	거치식 만기지정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 보험관련 코드

❍ 보험종류 구분(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코드	구분
01	종신보험
02	정기보험
03	질병(건강)보험 (CI 보험 포함)
04	상해보험
05	암보험
06	간병(요양)보험
07	어린이보험
08	치아보험
09	연금저축보험
10	연금보험
11	저축보험(양로보험 포함)
12	교육보험
13	운전자보험
14	여행자보험
15	골프보험
16	실손의료보험
17	자동차보험
18	화재/재물보험
19	배상책임보험
20	보증(신용)보험
21	펫보험
22	종합보장보험
99	기타보험

보험 계약상태(코드)

코드	구분	정의
02	정상	보장개시(초회보험료 납입) 및 승낙처리 된 상태
04	실효	계속보험료 연체로 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효력이 상실된 상태
05	만기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상태
06	소멸	지급소멸, 만기소멸, 납입면제 등에 따른 소멸 상태 → 단, 납입면제 이후 보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정상(02)상태 등록 → 종신보험의 연금보험 전환 시, 주계약이 해지되면서 특약은 정상인 상태에는 종신보험의 주계약 상태를 소멸로 정의

※ 보험계약상태 (코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의 내용을 일부 차용하였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삭제 등의 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구분(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코드	구분
0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02	자동차종합보험
03	자동차자손보험
04	운전자보험
05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자동차 유한보험
06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
07	통합계약
09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
11	개인용자동차보험
12	업무용자동차보험
13	영업용자동차보험
18	이륜자동차보험
19	농기계보험
20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21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라. 금융투자업 정보 관련 코드

○ 계좌 종류(코드)

코드	구분	정의
101	종합매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
102	위탁	개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회사의 위탁계좌
103	파생상품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위탁계좌
104	단기금융상품	만기 1년 이내 금융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
105	연금	연금 계좌
106	현물	거래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이 동일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
107	퇴직연금	개인형 IRP
108	기타	

○ 계좌 상태(코드)*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9호(증시 주변 자금 현황) 참고

코드	구분	정의
201	정상(활동)	통합이나 폐쇄되지 않고 실제 활동 중인 계좌
202	통합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통합한 계좌
203	폐쇄	투자자가 폐쇄요청하거나 계좌의 잔액·잔량이 '0'이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폐쇄한 계좌
204	기타	정상, 통합, 폐쇄 상태가 아닌 계좌

거래종류(코드)

코드	구분	정의
301	입금	입금(현금)
302	출금	출금(현금)
303	입고	증권사가 증권예탁원에 증권을 넣는 행위
304	출고	증권사가 증권예탁원에서 증권을 빼는 행위
305	매수	증권을 사는 행위
306	매도	증권을 파는 행위
307	상환	발행주체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행위
308	설정	가입기간을 정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행위에서 본격적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하기 시작하는 행위
309	기타	

상품종류(코드) 및 종목코드

구분	상품종류(코드)	종목코드	정의
국내주식	401	ISIN CODE	주식, 리츠, 수익증권, 코넥스, K-OTC, 장외주식 기타, ETF, ELW, ETN 등
해외주식	402	ISIN CODE	미국, 홍콩, 중국, 해외ETF, 해외DR 등
국내채권	403	ISIN CODE	국채, 지방채, 회사채, 통안채 등
해외채권	404	ISIN CODE	해외국채, 해외금융채, 해외회사채 등
대출채권	405	ISIN CODE	기업금융, PF, CP, 사모사채 등
국내파생결합증권	406	ISIN CODE	ELS, DLS, ELB, DLB 등
해외파생결합증권	407	ISIN CODE	해외ELS, 해외DLS, 해외ELB, 해외DLB 등
국내장내파생상품	408	ISIN CODE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등
해외장내파생상품	409	자체코드	해외 지수선물, 해외 지수옵션 등
기타파생상품	410	자체코드	장외파생, 외부선물사장내파생 등
국내단기금융상품	411	ISIN CODE	CD, CP, 전단채, RP, REPO, 발행어음, 소매채권 등
해외단기금융상품	412	ISIN CODE	해외CD, 해외대고객RP 등

구분	상품종류(코드)	종목코드	정의
국내펀드	413	협회표준*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주식형, 혼합자산형 등)
해외(역내)펀드	414	협회표준*	해외(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
해외(역외)펀드	415	자체코드	해외(역외)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
랩	416	자체코드	주식운용형, 자문운용형, 채권운용형 등
신탁	417	자체코드	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등
현금과 예금	418	자체코드	MMDA, CMA, 보통예금 등
퇴직연금	419	자체코드	IRP
현물	420	ISIN CODE	금현물 등
기타	421	자체코드	위 제외 기타 모든 상품

* 협회표준 : 금융투자협회 표준코드

마. 전자금융업권 거래유형 코드

○ 거래유형(코드)

구분			코드
선불금융거래	충전	카드	5101
		계좌이체	5102
		포인트	5103
		무통장	5104
		상품권	5105
		기타	5109
	충전취소	카드	5111
		계좌이체	5112
		포인트	5113
		무통장	5114
		상품권	5115
		기타	5119

구분			코드
선불금융거래	송금	계좌송금	5201
		계정송금	5202
		기타	5209
	송금수취	계좌송금	5221
		계정송금	5222
		기타	5229
	송금반환(취소)	계좌송금	5211
		계정송금	5212
		기타	5219
	적립		5301
	적립취소		5311
	송금수수료		5401
결제정보 (선불,PG등)	결제	카드	6101
		계좌이체	6102
		포인트	6103
		무통장	6104
		기타	6109
	결제취소	카드	6201
		계좌이체	6202
		포인트	6203
		무통장	6204
		기타	6209

○ 상품(구매) 분류 (코드)

구분	카테고리 포함 내역	코드
가전/전자	가전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포함)	A1
도서/문구	서적, 사무 문구	B1
패션/의류	의복, 신발, 가방, 패션용품 및 악세서리	C1
스포츠	스포츠 용품	D1
화장품	화장품	E1
아동/유아	아동/유아용품	F1
식품	음식료, 농축수산물	G1
생활/가구	생활용품(꽃 포함), 자동차용품, 가구, 애완용품	H1
여행/교통	여행 용품, 교통 관련 결제	I1
문화/레저	영화표 등	J1
음식	음식 배달	K1
e쿠폰/기타서비스	기프티콘, 상품권 등	L1

바. 카드정보 코드

○ 카드브랜드 (코드)

브랜드명	코드	Note
VISA	I01	국제브랜드
MASTER	I02	
Unionpay(UPI)	I03	
AMEX	I04	
JCB	I05	
Discover	I06	
Diners	I07	

브랜드명	코드	Note
L.Global	D01	상기 국제브랜드사와 제휴하여 국내 카드사가 운영 중인 고유(자체) 브랜드
BC Global	D02	
S&	D03	
URS	D04	
oneway	D05	
K-world	D06	
W	D07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제공 포인트 종류

회사명	포인트 명	제휴/자체 구분표기
롯데카드	L.POINT	제휴
롯데카드	UNIT 포인트	자체
비씨카드	TOP	자체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자체
삼성카드	삼성카드U포인트	자체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자체
우리카드	위비꿀머니	자체
우리카드	모아포인트	자체
하나카드	하나포인트	자체
하나카드	예스포인트	자체
현대카드	H-coin	자체
KB국민카드	포인트리	계열사/제휴/자체 포인트 포함
NH농협카드	NH포인트	자체

부록 2.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서비스 상세

가. 종합포털 서비스 목록 및 참여자 역할

서비스 구분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고 객
가. 참여기관 등록·관리	O	O	
나. 지원서비스 전용 접근토큰 발급·관리	O	O	
다. 서비스 자격증명 발급·관리	O	O	
라. 마이데이터서비스 실환경 테스트 지원	O	O	
마. 통계정보 제공	O	O	O
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내역 통합조회	O		O
사. 정보제공자 서비스 상태 조회	O	O	
아. 마이데이터 소개 및 고객지원서비스	O	O	O

나. 서비스 상세

1. 참여기관 등록·관리

- 마이데이터사업자와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기관 등록 절차를 필수 수행

[1-1] 기관 등록(기관가입)

- 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서비스 사용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관코드를 생성한 뒤 안내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기관 등록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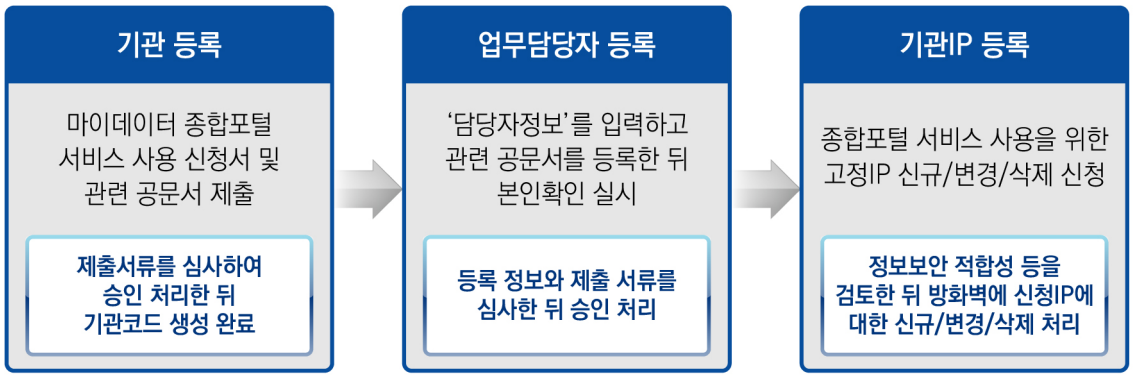

[1-2] 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

- 업무담당자는 소속 기관 검색*, 기본정보 입력**, 관련 공문서 등록을 완료한 뒤 본인 확인 실시

  * 1단계(기관 등록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서 생성된 기관코드/기관명으로 검색
  ** 희망ID, 비밀번호, 소속, 직급, 회사번호,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등록된 정보와 공문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 처리하고 해당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로 처리결과 안내

- 업무담당자 등록 변경·해지의 경우에도 신규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1-3] 기관IP 등록

- 마이데이터사업자 및 정보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종합포털에 접속하기 위한 기관별 고정IP 등록 필요

- 등록한 IP에 대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 처리하고 해당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로 처리결과 안내

- 기관IP 등록 변경·삭제의 경우에도 신규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2. 지원서비스 전용 접근토큰 발급·관리

-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포털과 마이데이터사업자/정보제공자 간의 접근토큰을 발급하고 관리

  - 종합포털에 등록된 TLS인증서와 IP를 통해 종합포털과의 네트워크 상호인증 및 암호화채널 형성 우선 필요

- (지원API* **종합포털이 접근토큰 발급)**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가 종합포털에 지원API를 호출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 참조

  - **(대상 서비스)** ❶기관정보 수신, ❷서비스정보 수신, ❸API 통계자료 전송

- (지원API* **마이데이터사업자/정보제공자가 접근토큰 발급)** 종합포털이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에 지원API를 호출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의 참조

  - **(대상 서비스)** ❶정보제공자 상태 조회, ❷정보주체별 전송요구 내역 통합조회, ❸API 통계자료 재전송 요청

- 향후 접근토큰 갱신/폐기 시에도 발급절차와 유사하게 수행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격증명 발급·관리

-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개별·통합)인증, 기타 지원·관리기능 등 데이터 표준 API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앱 운영을 위해 자격증명이 필요

- 종합포털에 등록된 기관정보와 서비스(자격증명)정보를 해당 지원 API를 통해 수신 가능

[3-1] 자격증명 발급

- **(마이데이터사업자)** 실제 운영할 마이데이터 서비스앱 단위로 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필수정보 등록

  - 2개 이상의 서비스앱 운영 시 개별적으로 자격증명 발급 신청

예시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위한 필수정보 내역**

1) 서비스앱 명칭 및 서비스 상세설명
2) Call Back URL, TLS 인증서 정보
3) API 송수신 서버 및 TLS 서버의 도메인명, IP, Port
4) 정보제공자와 종합포털에 API를 호출할 수 있는 Client IP, Port 등

- **(정보제공자)** 기관 단위로 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필수정보 등록

예시 **정보제공자의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위한 필수정보 내역**

1) 데이터 표준 API 제공목록
2) Call Back URL, TLS 인증서 정보
3) API 송수신 서버 및 TLS 서버의 도메인명, IP, Port
4)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종합포털에 API를 호출할 수 있는 Client IP, Port 등

- 필수정보 등록 및 심사가 완료되면 자격증명(Client ID/Secret)이 발급됨

[3-2] 자격증명 정보 제공

- (지원API* **기관정보 수신)** 종합포털에 등록된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의 기관정보 수신용 API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 참조

예시 **기관정보 수신 API 상세항목**

1) 기관정보 신규/수정/삭제 여부
2) 기관코드/기관명/기관구분(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등)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4) API 송수신 서버 도메인명, IP, Port
5) 이용 중인 중계기관 기관코드

- (지원API* **서비스정보 수신)** 종합포털에 등록된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서비스정보 수신용 API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 참조

예시 서비스정보 수신 API 상세항목

1) 서비스정보 신규/수정/삭제 여부
2) 기관코드/서비스명/Client ID/Client Secret/Call Back URL
3) 정보제공자에게 API를 호출할 클라이언트(마이데이터사업자) IP, Port

4. 마이데이터 서비스앱 실환경 테스트 지원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서비스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제공자와의 실환경 테스트를 수행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종합포털에 등록된 정보제공자 중에서 실제 API 송수신 테스트가 필요한 정보제공자를 선택하고 해당 정보제공자(업무담당자)와 테스트 상세방안*을 협의·이행

  * 테스트 범위,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기간, 테스트 절차 등

  – 기능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정보제공자는 '기능테스트 확인서(공문서)'를 종합포털에 등록

〈 (예시) 기능테스트 신청(현황) 확인 〉

여수신	카드	보험	금융투자

정보제공자	업무담당자	연락처	중계기관	제공 API 목록	선택	테스트결과
OO은행	O O O	02-0000-0000, test@test.co.kr	신용정보원	계좌거래내역	☑	완료 확인서 다운로드
				투자상품거래이력	☑	
				연금상품납입정보	☐	
OO은행	O O O	02-000-0000, loan@loan.co.kr	–	계좌거래내역	☑	진행중
	O O O	051-000-000, loan2@loan.co.kr		투자상품거래이력	☑	
OO은행	O O O	042-000-0000, acount@ba.com	금융결제원	계좌거래내역	☑	완료 확인서 다운로드
				투자상품거래이력	☑	
				연금상품납입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통계정보 제공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 표준 API 전송내역 등' 통계자료를 종합포털에 전송하고, 종합포털은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산업통계·지표 제공 및 과금모델 개발 등에 활용

[5-1] 통계자료 전송

- (지원API* **API 통계자료 전송)**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종합포털에 통계자료를 주 단위로 정기적/비정기적 전송을 구분하여 전송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 참조

예시 **API 통계자료 전송항목**

1) 기관코드, 자격증명(Client ID), 통계정보구분(정기적/비정기적)
2) 접근토큰 발급/갱신/폐기 현황
3) 전송 API 종류, 전송시간, 응답시간, 전송성공횟수, 실패횟수 및 사유 등

- (지원API* **API 통계자료 재전송 요청)** 마이데사업자가 API 규격 오류, 전송 실패, 또는 잘못된 정보 집중 등 정상적으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종합포털에서 재전송을 요청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 참조

[5-2] 통계자료 제공

- 집중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API 송수신의 안정성, 신속성, 활성화 등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 현황을 대국민/마이데이터사업자/정보제공자 별로 용도 구분하여 제공

  - 마이데이터사업자/정보제공자에게 소속기관별로 API 전송 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향후 과금 시 통계수치 대사)**

6.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내역 통합조회

-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한 전송 요구내역에 대해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서비스 제공

  – (지원API* **정보주체별 전송 요구내역 조회)** 정보주체가 종합포털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 종합포털에 등록된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체에 본인의 전송 요구내역 보유 여부와 상세내역을 요청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 참조

예시 전송 요구내역 회신항목

1) 서비스명, 자격증명(Client ID)
2) 전송요구 상세내역, 전송요구일자, 전송요구만료일자 등

〈 (예시) 전송 요구내역 통합조회 결과 〉

마이데이터사업자	서비스앱	정보제공자	동의내역	동의일자
OO카드	OOOO	OO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 8. 10.
			투자상품거래이력	2021. 8. 10.
			연금상품납입정보	2021. 9. 25.
	△△△	OO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 8. 16.
			투자상품거래이력	2021. 8. 16.
(주)OO페이	□□□□	OO카드	계좌거래내역	2021. 8. 20.
			투자상품거래이력	2021. 9. 15.
			연금상품납입정보	2021. 9. 13.
·····	·····	·····	·····	·····

7. 정보제공자 서비스 상태 조회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종합포털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API 송수신용 서버 상태(가용여부) 조회 가능

  - (지원API*) **정보제공자 서비스 상태 조회)**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특정 또는 전체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상태** 조회 요청 가능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명세' 참조
** 상태종류 : 정상, 장애, 시스템점검, 기타

8. 마이데이터 소개 및 고객지원서비스 제공

- 마이데이터 생태계 및 참여 Player,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하고, 주요소식과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며, 산업 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분쟁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마이데이터 소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데이터 표준 API,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마이데이터 보안환경, 가이드라인,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현황 및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등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예시)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현황 및 서비스 상세내용 검색결과 〉

마이데이터사업자	서비스앱	서비스내용	이용 API		서비스개시일
OO카드	OOOO	은행계좌조회 대출통합조회 카드통합조회 보험통합조회 종합자산관리	여수신	계좌목록	2021. 8. 20.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대출목록	
				대출정보	
				대출거래내역	
			카드	카드목록	
				카드정보	
				카드청구내역	
			보험	보험계약목록	
				보험계약정보	
				보험계약납입내역	
(주)OO페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시) 정보제공자 현황 및 상세내용 검색결과 〉

정보제공자	제공 API		API 제공일	중계기관
OO은행	여수신	계좌목록	2021. 8. 9.	-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대출목록	2021. 6. 4.	
		대출정보		
		대출거래내역		
OO카드	카드	카드목록	2021. 8. 5.	신용정보원
		카드정보		
		카드청구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지원서비스)**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소식(언론스크랩), 보도자료 등을 안내하고 FAQ, 민원(분쟁) 접수·처리 서비스 등을 제공